



2019년 제5차 임시이사회 회의록

-총182차-

【개최일시】 2019년 12월 19일(목) 16:00

【개최장소】 서울대교구청 별관 1층 대회의실

【참석인원】 이사 9명(정원 9명) / 감사 1명(정원 2명)

출석이사: Fr. 황경원, Bp. 유경춘, Fr. 김성훈, 오혜경, 심점섭, 전재희, 김명근
정태호, 김영주 (9명)

출석감사: 김기선 (1명)

배 석: Fr. 조용철(법인 부회장), Fr. 김원호(법인 부회장), 법인사무국 담당(관)8명

【의안상정】

제1호 의안 법인 「기본재산취득」(안) 승인 요청의 건

제2호 의안 법인 「기본재산」 방화동물건 사용(안) - 주거지원사업
- 승인 요청의 건

제3호 의안 법인 산하 「서울가톨릭 장애인복지시설협의회 공통운영규정」 개정
(안) 승인 요청의 건

제4호 의안 법인 산하 직영시설 시설장 임면(안) 승(추)인 요청의 건

제5호 의안 법인 산하 직영시설 폐지·등록 전환(안) -꾸러기동산어린이집·참좋은
기초학교- 승인 요청의 건

제6호 의안 민간위탁사회복지시설의 위·수탁운영협약기간 만료에 따른 수탁운영
신청(안)-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시립성동노인종합복지관- 승인 요
청의 건

제7호 의안 법인 산하 수탁시설 강남구립 성모(논현)어린이집 사무 위·수탁계약
만료 전 계약 해지 요청(안)에 대한 승인 요청의 건

제8호 의안 법인 및 산하 직영·수탁시설 2019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
인 요청의 건

제9호 의안 법인 및 산하 직영·수탁시설 2020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
(안) 승인 요청의 건

제10호 의안 카리타스사회적기업지원센터 「서민금융진흥원 2014년 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 신청 및 2020년 사업계획(안) 승인 요청의 건

제11호 의안 법인 산하 직영시설 「비둘기보호작업장」 시설유형변경(장애인직업적
응훈련시설)에 따른 명칭 변경(안) 승인 요청의 건

【기타 보고사항】

기타보고1. 법인 산하 직영시설 「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유형 변경 신청 경과 보고 건

기타보고2. 법인 산하 직영시설 「성가정노인종합복지관」 및 수탁시설 「유락종합사회복지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공개 모집 신청 경과 보고 건

【폐회】

□ **개회 정족수 보고 및 개회 선언**

의장은 오후 4시 상임이사의 정족수 보고를 들은 후, 시작기도로 「카리타스인의 기도」를 바치고 정관 제 19조 제2항 및 제21조 규정에 의거하여 본 이사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으므로 개회를 선언하다.

□ **의장 황경원 인사 말씀**

바쁜 일정 중에도 본 법인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귀한 시간을 내어 함께 자리해주신 임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오늘 제5차 임시이사회회의에서는 법인 「기본재산취득」(안) 승인 요청 등 총11건의 상정 의안을 심의의결하고자 하며 각 의안에 대하여 임원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전차 이사회의록 확인**

의장은 출석이사에게 전차회의록에 대한 보완 수정할 부분의 유무를 묻고 출석이사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전차 회의록을 확정시키다.

의안심의

■ **제1호 의안 : 법인 「기본재산취득」 (안) 승인 요청의 건**

◎ **의장 황경원** : 제1호 의안인 법인 「기본재산취득」 (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김성훈 상임이사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임이사 김성훈** : 제1호 의안인 법인 「기본재산취득」 (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이하 자료를 참조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인 「기본재산취득」 (안)

□ **취득 부동산 현황**

종류	규모(㎡)	소유자	평가액(원)	비고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611-3 다성아파트 1층 103호	■ 대지권 비율 236분의 7.26 ■ 전유 부분 26.25㎡	홍	57,000,000	

□ **취득 부동산 용도 : 수익사업용(임대)**

▶ 취득 사유

1. 지난 2019년 10월 17일자 천주교의정부교구 구리성당 신자인 홍 (엘)님께서 본 법인을 방문하여 기증자님이 소유하고 계신 구리시 소재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여 그 임료 상당액을 청소년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재원(財源)으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시면서 본 법인에 기증함.
2. 현재, 해당지역의 임대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아파트를 보증금 1천만원, 월 임차료 30만원에 임차인을 모집하고 있는 중에 있으며, 향후 적합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 수익금인 차임상당액을 본당 또는 산하 시설을 통해 불우한 청소년들의 장학금으로 활용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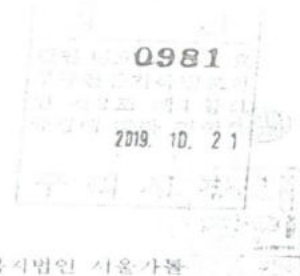
※ 이하, 구리시물건 증여계약서 실물 사본

TEL: (02) 214-9000

증 여 계 약 서

- 부동산의 표시 -

○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611-3 다성아파트 제1층 제 호
대지권 비율 236분의 7.26
전유부분 26.25㎡



위 부동산은 증여인 홍숙희씨의 소유인 바 금번 수증인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 사회복지회에게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증여할 것을 약속하고 수증인은 이를 승낙하였으므로 후원을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서명한다.

※ 기부조건 :

- ① 위 증여부동산을 수익사업으로 활용하여 그 수익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활용되었으면 한다.
- ② 또한 향후에 수증인의 사정으로 위 증여부동산을 매각하게 되는 경우 그 대금을 청소년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한다.

2019년 10 월 17 일

증여인 : 홍숙희

수증인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80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법인등록번호 : 11713-010053

대표이사 유길준



◎ 의장 황경원 : 임원분들께서는 제1호 의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고견을 주시기 바라며 특별한 사항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이사와 감사는 제1호 의안의 심의를 통하여 해당 의안에 문제점 및 특이 조치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다. 이후, 의장은 출석이사 전원의 동의와 재청으로 제1호 의안인 법인 「기본재산취득」 (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제2호 의안 : 법인 「기본재산」 방화동 물건 사용(안) - 요청의 건

주거지원사업- 승인

◎ 의장 황경원 : 제2호 의안인 법인 「기본재산」 방화동 물건 사용(안)-
요청 건에 대하여 김성훈 상임이사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지원사업- 승인

◎ 상임이사 김성훈 : 제2호 의안인 법인 「기본재산」 방화동 물건 사용(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이하 자료를 참조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거지원사업-

법인 소유 「기본재산」 방화동 물건 사용 승인(안)

□ 방화동 물건 현황

종류	규모(㎡)	평가액(원)	비고
서울시 강서구	■ 대지권 비율 39.26/7443.5 ■ 전유 부분 84.96	400,000,000	

□ 취득 사유

1. 방화동 물건은 지난 2008년 4월경 월곡동 신자(김)분께서 기증한 부동산으로 그 동안 마음자리(미혼 모시설), 단중독사목위원회에서 알콜중독자 쉼터 등으로 2019년 9월까지 활용되었으며 현재는 공가(空家)임
2. 본 법인 산하 직영시설인 는 보호시설 유형 중 가족보호시설로 을 함께 보호하고 있는데 입소기간은 최장 1년이며 만기 퇴소 시 자립할 주거지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3. 현재 에서는 4채의 주거지원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2020년 2월 28일자로 소재 주거지원 시설이 폐쇄될 예정(시설노후)이며, 이에 따라 주거지원의 수요 대비 공급 차질이 예상되어 새로운 주거지원 확보가 필요하여 방화동 물건을 사용하고자 법인에 승인을 요청 해왔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한 자료(주거지원사업 확대)를 참조해주시기 바람.

※ 이하 p.5, 「

주거 지원 사업 계획」(안)

▶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는 유형 중 가족보호시설로 을 함께 보호하고 있음. 입소기간은 최장 1년이며 만기 퇴소 시 자립할 주거지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2. 현재, 에서는 4채의 주거지원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2020년 2월 28일 날짜로 소 재 주거지원 시설이 폐쇄될 예정(시설노후)이며, 이에 따라 주거지원의 수요 대비 공급 차질이 예상됨.

[참고] 2018년도 입·퇴소 현황

구 분	입 소 자 (단위:명)	퇴 소 자 (단위:명)	퇴소 시 주거 상태 (단위:가구)			
			귀 가	아는 사람	주거 지원	독 립
	14	10	2	4	4	2
	17	12				

- 1) 아는 사람은 주로 친정으로의 복귀를 나타냄.
 - 2) 주거지원을 가장 선호하나 공급의 한계가 있어 친정집이나 독립을 선택하는 상황임.
 - 3) 독립할 경우 월세보증금, 월세 등 주거비용 부담이 커 경제상황이 악화됨.
 - 4) 주거지원 거주기간은 2년이며 1회 연장할 수 있어 회전율이 낮음.
3. 본 시설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주거지원 확보를 통해 보호시설 퇴소 후 들의 자립생활 기 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사업 내용

1. 방화동 소재 주거지원 물건 확보(법인소유)

- 1) 소재지 주소 : 서울시 강서구
- 2) 두 가구 입소를 원칙으로 하며 입소자 선정은 주거지원 선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3) 주거기간은 3년으로 함. (동일 대상자에 대한 갱신 없음.)

▶ 추진 절차

1. 사업신청서 법인 제출
2. 법인 이사회 승인
3. 법인과 사업계약 체결
4. 서대문구청 여성가족과 보고
5. 이행 절차 추진

□ 소요 예산

1. 건물이용에 따른 관리비는 입주자 부담 원칙
2. 가전, 가구 등 주거지원에 필요한 물품은 시설폐쇄 예정인 [] 소재 주거지원 시설에서 확보
3. 화재보험과 기타 물품 구입비용 등은 [] 후원금에서 충당

□ 기대 효과

1. 주거지원 확대로 자립기반 마련
 - 1) 입소자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가능
 - 2) [] 의 안정적인 경제적 자립 준비 가능
 - 3) 동반자녀들의 심리적인 불안 완화 및 가족 결속력 강화

□ 예상 문제점 및 대응 방안

1. 원거리 소재로 인한 관리범위의 확대
 - 1) 안전사고 및 규칙 위반 사례 발생 가능성 증가
 - ⇒ 안전사고 대비 매뉴얼을 중심으로 교육 강화, 주택 안전 점검 강화, 안전규칙을 위반할 경우 처벌조항 강화
 - ⇒ 월 1회 방문상담을 통해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해결책 모색 및 시설 안전점검 실시

◎ 의장 황경원 : 임원분들께서는 제2호 의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고견을 주시기 바라며 특별한 사항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이사와 감사는 제2호 의안의 심의를 통하여 해당 의안에 문제점 및 특이 조치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다. 이후, 의장은 출석이사 전원의 동의와 재청으로 제2호 의안인 법인 「기본재산」 방화동물건 사용(안)-주거지원사업-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제3호 의안 : 법인 산하 「서울가톨릭 장애인복지 시설협의회 공통운영규정」 제1차 개정 (안) 승인 요청의 건

◎ 의장 황경원 : 제3호 의안인 법인 산하 「서울가톨릭 장애인복지 시설협의회 공통운영규정」 제1차 개정 (안) 승인 요청 건 대하여 김성훈 상임이사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의안은 정태호 이사님과 법인운영위원회 위원 겸 법인 자문 손창배 노무사의 사전 검토를 완료함.)

◎ 상임이사 김성훈 : 제3호 의안인 법인 산하 「서울가톨릭 장애인복지 시설협의회 공통운영규정」 제1차 개정(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이하 자료를 참조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가톨릭 장애인복지시설협의회 「운영규정」 제1차 개정(안)

▶ 개정 취지

최근에 개정된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게 되었으며 또한 채용부분이나 징계사유 등 일부 공통운영규정을 보완하여 원활한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 개정 내용

구분	주요 개정 내용
제15조 (구비서류)	■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항 등)에 따른 채용전용시 제출서류에 차별적인 조항 제외
제33조 (징 계)	■ 징계사유 구체화
제39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남녀고용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의 2, 제19조의 2, 제19조의 4」 개정 (시행 2019. 10. 01.) 반영하여 분할사용가능, 단축기간은 1년 이내이나 육아휴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하여 사용가능(최대 2년 사용가능)
제38조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 「남녀고용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의 2, 제22조의 2」 개정 (시행 2019. 10. 01.) 반영하여 신청가능한 가족의 범위 확대, 가족돌봄 휴직 이외에 가족돌봄휴가 가능 등
제38조의 2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 「남녀고용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장의 2, 제 22조의 3」 개정 (시행 2019. 10. 01.) 반영하여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단축 신설
제50조 (배우자 출산휴가)	■ 「남녀고용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 제18조의 2」 개정 (시행 2019. 10. 01.) 반영하여 10일 휴가 가능
제66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등	■ 「근로기준법」 개정 (시행 2019. 07. 16.) 반영하여 신설

※ 이하 「서울가톨릭 장애인복지시설협의회 운영규정」 제1차 개정(안) 본문 참조

서울가톨릭 장애인복지시설협의회 「운영규정」 제1차 개정(안)

현 행	개정 (안)	개정 사유
제11조 (기피) 위원회의 부의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	제11조 (의결제척) 위원회의 부의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	[개정] ■ 보편적인 단어로 변경 필요

현 행	개정 (안)	개정 사유
제15조 (구비서류) ① 채용전형에 지원하는 자는 시설의 요구가 있을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사진포함) 1부 2.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1부 3.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4.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5. 자기소개서	제15조 (구비서류) ① 채용전형에 지원하는 자는 시설의 요구가 있을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삭제) 1부 2. 삭제 3. 삭제 4. 변경사항 없음 5. 변경사항 없음	[삭제]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 용모 등 신체조건, ... 혼인 여부, ... 인종, 피부색, ... 학력, ...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의거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개정이 필요함. ■ 장애인시설 평가시 직원채용 영역 점수배점 사항을 고려하여 개정이 필요함.
제17조 (수습) ① 직원은 신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수습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교부한다. ②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는 때 2. 시설의 규칙을 위반한 때 3. 제1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용제한 사유가 발견된 때 4.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 5. 시설장 또는 수습종료 전 수습평가 회의 결과, 근무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할 때 ③ 수습기간은 근무연수에 산입한다.	제17조 (사용) ① 직원은 신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사용기간을 두며, 사용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사용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교부한다. ② 사용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변경사항 없음. 2. 변경사항 없음. 3. 변경사항 없음. 4. 변경사항 없음. 5. 시설장 또는 수습종료 전 사용평가 회의 결과, 근무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할 때 ③ 사용기간은 근무연수에 산입한다.	[수정] ■ '수습'은 정식채용 후 의미가 포함되므로 정식채용 전의 적합한 의미인 '사용'으로 변경 필요함.
제18조 (근로계약 및 임면보고) ① 시설장은 수습기간 종료 후 수습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확정된 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 사본1부를 교부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직원의 임면내용을 법인에 보고한다.	제18조 (근로계약 및 임면보고) ① 시설장은 사용기간 종료 후 사용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확정된 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교부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직원의 임면내용을 법인 및 시·군·구에 보고한다.	[수정] ■ 임면보고는 시·군·구 보고서 형이어서 추가함.

현 행	개정 (안)	개정 사유
제24조 (복무자세) ① 직원은 시설의 사명을 항상 명심하고 관계 제규정을 준수하여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성실의 의무) ②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복종의 의무) ③ 직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직원 이탈금지) ④ 직원은 직무수행에 있어서 항상 친절, 공정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친절, 공정의 의무) ⑤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시에도 시설에 관한 사항을 무단히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비밀엄수의 의무) ⑥ 직원은 청렴결백하여야 하며, 그 직무에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사례, 증여,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청렴의 의무) ⑦ 직원은 시설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항상 언행을 조심하고 인격 도야에 노력하여야 한다. (품위유지) ⑧ 직원은 직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시설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겸직금지)	제24조 (복무자세) ① 변경사항 없음. ② 변경사항 없음. ③ 변경사항 없음. ④ 변경사항 없음. ⑤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시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비밀엄수의 의무) ⑥ 변경사항 없음. ⑦ 변경사항 없음. ⑧ 변경사항 없음.	[수정] ■ 이해하기 쉬운 보편적인 문구로 변경이 필요함.
제33조 (징 계) ① 직원이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처분 할 수 있다. 1. 시설의 제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시설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징계의 심의 요구, 절차 및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은 <u>징계규정이 정하는</u> 바에 의한다.	제33조 (징 계) ① 변경사항 없음. 1. 학력 또는 경력을 사칭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입사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자주 결근, 지각, 조퇴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3. 이 규칙을 수차례에 걸쳐 거듭하여 위반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에 손해를 입힌 경우 5. 형사상 범죄행위를 한 경우 6. 시설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질서를 문란	[수정] ■ 징계사유를 구체화

현 행	개정 (안)	개정 사유
	제한 경우 7.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또는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8. 시설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을 입힌 자 9. 시설의 영업을 방해하는 언행을 한 자 10. 시설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11. 정당한 이유 없이 시설의 물품 및 금품을 반출한 자 12.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자 13. 회사가 정한 복무규정을 위반한 자 14.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자 15.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자 16.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② 징계의 심의 요구, 절차 및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함	
제37조 (육아휴직) ① 시설은 만 8세 이하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가진 직원이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이하“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허용한다. ②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시설은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법령이 정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④ 시설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기간에는 그 직원을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시설은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하여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제37조 (육아휴직) ① 변경사항 없음. ②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 분할사용이 가능하다. ③ 변경사항 없음. ④ 변경사항 없음. ⑤ 변경사항 없음.	[수정] ■ 「남녀고용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의 2, 제19조의4」 개정 (시행 2019. 10. 01)

현 행	개정 (안)	개정 사유
제39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시설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직원이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② 시설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직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설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직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⑤ 시설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직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시설은 직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직원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제39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시설은 직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변경사항 없음. ③ 시설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직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직원이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⑤ 변경사항 없음. ⑥ 변경사항 없음. ⑦ 직원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신설·수정] ■ 「남녀고용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의 2, 제19조의 2, 제19조의 4」 개정 (시행 2019. 10. 01)
제38조 (가족돌봄휴직 등) ① 시설은 직원이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①항 단서에 따라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제38조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① 시설은 직원이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수정] ■ 「남녀고용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의 2, 제22조의 2」 개정 (시행 2019. 10. 01)

현 행	개정 (안)	개정 사유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4.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③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시설은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당 직원을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⑥ 시설은 소속 직원이 건전하게 직장과 가정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변경사항 없음. ③ 변경사항 없음. ④ 시설은 직원이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직원과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⑤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⑥ 시설은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직원을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⑧ 시설은 소속 직원이 건전하게 직장과 가정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38조의 2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① 시설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원이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원의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신설] ■ 「남녀고용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장 의 2, 제 22조의 3」 개정 (시행 2019. 10. 01)

현행	개정 (안)	개정 사유																																												
	2. 직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3. 55세 이상의 직원이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4. 직원의 학업을 위한 경우 ② 시설은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직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설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직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시설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직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시설은 직원의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직원을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제47조(경조휴가)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내 용</th><th>일 수</th></tr> </thead> <tbody> <tr> <td rowspan="3">결혼</td><td>본인</td><td>7일</td></tr> <tr> <td>자녀</td><td>2일</td></tr> <tr> <td>형제, 자매</td><td>해당일</td></tr> <tr> <td rowspan="4">사망</td><td>배우자, 자녀</td><td>7일</td></tr> <tr> <td>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td><td>5일</td></tr> <tr> <td>형제, 자매, 자녀의 배우자</td><td>2일</td></tr> <tr> <td>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 배우자</td><td>해당일</td></tr> <tr> <td>출산</td><td>배우자</td><td>3일</td></tr> </tbody> </table>	구분	내 용	일 수	결혼	본인	7일	자녀	2일	형제, 자매	해당일	사망	배우자, 자녀	7일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	5일	형제, 자매, 자녀의 배우자	2일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 배우자	해당일	출산	배우자	3일	제47조 (경조휴가)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내 용</th><th>일 수</th></tr> </thead> <tbody> <tr> <td rowspan="3">결혼</td><td>본인</td><td>7일</td></tr> <tr> <td>자녀</td><td>2일</td></tr> <tr> <td>형제, 자매</td><td>해당일</td></tr> <tr> <td rowspan="4">사망</td><td>배우자, 자녀</td><td>7일</td></tr> <tr> <td>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td><td>5일</td></tr> <tr> <td>형제, 자매, 자녀의 배우자</td><td>2일</td></tr> <tr> <td>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 배우자</td><td>해당일</td></tr> <tr> <td>출산</td><td>배우자</td><td>10일</td></tr> </tbody> </table>	구분	내 용	일 수	결혼	본인	7일	자녀	2일	형제, 자매	해당일	사망	배우자, 자녀	7일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	5일	형제, 자매, 자녀의 배우자	2일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 배우자	해당일	출산	배우자	10일	[수정] ■ 「남녀고용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 제18조의 2」 개정 (시행 2019. 10. 01)
구분	내 용	일 수																																												
결혼	본인	7일																																												
	자녀	2일																																												
	형제, 자매	해당일																																												
사망	배우자, 자녀	7일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	5일																																												
	형제, 자매, 자녀의 배우자	2일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 배우자	해당일																																												
출산	배우자	3일																																												
구분	내 용	일 수																																												
결혼	본인	7일																																												
	자녀	2일																																												
	형제, 자매	해당일																																												
사망	배우자, 자녀	7일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	5일																																												
	형제, 자매, 자녀의 배우자	2일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 배우자	해당일																																												
출산	배우자	10일																																												

서울가톨릭 장애인복지시설협의회 「운영규정」 제1차 개정(안)

현행			개정 (안)			개정 사유
구분	내용	일수	구분	내용	일수	
철순 등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해당일	철순 등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해당일	
기타 사유	본인이 수재, 화재, 기타 청원 휴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사유가 발생한 때	필요일	기타 사유	본인이 수재, 화재, 기타 청원 휴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사유가 발생한 때	필요일	
제50조 (배우자 출산휴가)			제50조 (배우자 출산휴가)			[수정] ■ 「남녀고용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 제18조의 2」 개정 (시행 2019. 10. 01)
시설은 남성 직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5일 범위 내에서 직원이 청구하는 일수만큼 휴가를 부여하며, 이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하고 나머지 휴가 일수는 무급으로 한다. 단,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사용할 수 없다.			시설은 남성 직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u>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단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1회 분할사용할 수 있다.</u>			
신설			제9장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제66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① 직장 내 괴롭힘이란 시설장 및 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② 직원은 시설 내 직원뿐 아니라, 다른 시설 직원에 대하여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 「근로기준법 제6장의 2, 제76조의 2」 개정 (시행 2019. 07. 16)
신설			제69조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시설에서 금지되는 구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② 지속 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③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④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⑤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⑥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현 행	개정 (안)	개정 사유
	⑦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 기간 동안 근로 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⑧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 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⑨ 그밖에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신 설	제67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① 시설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1시간으로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시설 내 괴롭힘 상담절차 4. 시설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5. 시설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6. 시설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7. 그밖에 시설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④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시설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을 직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신설] ■ 「근로기준법」 개정 (시행 2019. 07. 16)
신 설	제68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시설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시설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설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	[신설] ■ 「근로기준법 제6장의 2, 제 76조의 3」 개정 (시행 2019. 07. 16.)

현 행	개정 (안)	개정 사유
	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이하 "피해직원 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 직원 등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은 피해 직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시설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 직원이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설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은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 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시설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직원 및 피해 직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의장 황경원 : 임원분들께서는 제3호 의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고견을 주시기 바라며 특별한 사항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이사와 감사는 제3호 의안의 심의를 통하여 해당 의안에 대한 적법성·타당성이 인정되며, 문제점 및 특이 조치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다. 이후, 의장은 출석이사 전원의 동의와 재청으로 제3호 의안인 법인 산하 「서울가톨릭 장애인복지 시설협의회 공통운영규정」 제1차 개정(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제4호 의안 : 법인 산하 직영시설의 시설장 임면(안) 승(추)인 요청의 건

◎ 의장 황경원 : 제4호 의안인 법인 산하 직영시설의 시설장 임면(안) 승(추)인 요청 건에 대하여 김성훈 상임이사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임이사 김성훈 : 제4호 의안인 법인 산하 직영시설의 시설장 임면(안) 승(추)인 요청 건에 대하여 이하 자료를 참조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면직(안) 사항

구분	단체명	성명	직책	면직일자	비고 (면직 사유 등)
직영 [노인]	갈현동성당 데이케어센터	Sr. 박영미	시설장	2019. 12. 31.	■ 법인과 소속 수녀회(사랑의 씨튼수녀회) 간의 시설장 파견운영협약 종결.
직영 [장애인]	다함공동생활가정 다사랑공동생활가정	박 성 희	시설장	2019. 12. 31.	■ 시설장, 겸)사회재활교사에서 시설장직을 면함.

■ 대기발령 추인 사항

구분	단체명	성명	직책	면직일자	비고 (면직 사유 등)
직영 [장애인]	서로함께 청담 공동생활가정 서로함께 신림 공동생활가정	이 효 영	시설장	2019. 12. 12.	■ [별첨자료 1] p. 41 참조

■ 임명 승(추)인의 건

구분	단체명	성명	직책	임명일자	비 고
직영 [노인]	갈현동성당 데이케어센터	정 경 일	시설장	2020. 01. 01	■ 공개모집을 통한 채용(법인 시설인 사위원회 개최 12. 13. (금)) ■ 법인 수탁시설 서초구립노인요양센터 사무국장(現)
직영 [장애인]	다함공동생활가정 다사랑공동생활가정	김 원 호	시설장	2020. 01. 01.	■ 법인 부회장 겸직
직영 [장애인]	서로함께 청담 공동생활가정 서로함께 신림 공동생활가정	박 동 하	시설장	2019. 12. 12.	■ 해당 시설, 이효영 시설장의 대기발령으로 인한 대체 시설장 ■ 법인사무국 장애인복지 담당(계장) 겸직

※ 별첨자료 2: p. 44 참조 「시설장 임명자 이력서」 정경일, 박동하, 김원호

◎ 의장 황경원 : 임원분들께서는 제4호 의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고견을 주시기 바라며 특별한 사항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이사와 감사는 제4호 의안의 심의를 통하여 해당 의안에 문제점 및 특이 조치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다. 임원진은 임면(안) 중, ()공동생활가정 시설장에 대한 인사발령 사유를 보고받고, 법인 차원에서 해당 사안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최우선으로 보호되어야 할 입소장애인 등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대처해야할 것이며, 해당 시설의 인사발령을 받은 신임시설장은 시설의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다. 또한, 유사 사건·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법인 산하 직영·수탁시설에 시설관리운영 철저에 대한 안내 및 유사 형태의 시설에 특별업무점검을 실시하여 산하 직영·수탁시설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특별히 당부하다. 이후, 의장은 출석이사 전원의 동의와 재청으로 제4호 의안인 법인 산하 직영시설의 시설장 임면(안) 승(추)인 요청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제5호 의안 : 법인 산하 직영시설 탈퇴(안) -꾸러기동산어린이집·참좋은 기초학교-승인 요청의 건

◎ 의장 황경원 : 제5호 의안인 법인 산하 직영시설 탈퇴(안) -꾸러기동산어린이집·참좋은 기초학교-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김성훈 상임이사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임이사 김성훈 : 제5호 의안인 법인 산하 직영시설 탈퇴(안) -꾸러기동산어린이집·참좋은 기초학교-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이하 자료를 참조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꾸러기동산어린이집」

1. 시설 현황

시 설 명	꾸러기동산어린이집	이 용 인 원	1일 평균 35명
관 할 지 자 체	구로구청	시 설 규 모	대지 : 80㎡, 건물 : 214.67㎡
소 재 지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7라길 32	시 설 소 유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최 초 등 록 일	2008년 9월 1일	법 인 전 입 금	400천원
주 요 사 업	그림책을 통한 인성교육, 안전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배움텃밭) 등		

2. 직영시설 폐지 사유

- 해당 어린이집은 지난 2008년 9월 1일 現 이화북 시설장(이하 '기증자')이 본 법인에 재산을 기증한 어린이집이었음. (※ 기증 당시에는 現 원장 명의 민간어린이집)
- 기증자의 요청 사항:
 - 지난 2008년, 본 법인과 기증자간에 「증여 및 운영협약서」(이하, '협약서'라 함.)를 체결함. (위탁운영관리)
 - 특히, '협약서' 제3조(증여재산의 사용)에 근거하여 기증 후에도 기증자명의로 민간어린이집으로 해오고 있음

- ③ 위와 같은 이유로 '가톨릭어린이집협의회' 차원에서 제정한 '공동운영규정'의 적용을 원하지 않는다면 적용 제외를 요청 해오는 등 직영시설이 아닌 '등록시설'로의 관리를 요청 함.

※ 참고자료:

「꾸러기동산어린이집 증여 및 운영협약서」 해당 조항 일부 발췌

제3조(증여재산의 사용) ③ 증여인 이화복(이하 '을'이라 한다)이 사망하거나 꾸러기동산어린이집의 운영권을 포기 하는 경우에는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이하 '갑'이라 한다)에게 그 사용권이 귀속한다.

3. 법인 진행사항:

- 1) 기증자의 요청에 따라 본 법인 소유인 부동산을 기증자가 민간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해당 부동산 이용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최근에 본 법인과 기증자 간의 「부동산 무상사용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으며,
- 2) 본 법인과 기증자 간의 합의로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 유형을 '직영시설' ⇒ '등록시설'으로 변경하고자 이사회의 승인을 요청함.

※ 향후 관리 방향

- 1) 금번 이사회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직영시설(사업계획 및 예산, 사업보고 및 결산에 대한 이사회 승인, 업무 점검 수검의무 등)에서 등록시설(연 1회 사업계획·보고, 예·결산 보고)로 전환하여 관리하고자 하며,
- 2) 2020년 평신도사립단체 인준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산하 '등록단체'로 운영 주체를 변경하여 관리할 예정임.

「참좋은 기초학교」

1. 시설현황

시 설 명	참좋은 기초학교	이 용 인 원	1일 평균 9명
소 재 지	서울시 구로구 고척로 51길 42	시 설 규 모	대지 372㎡ / 건물 659.6㎡
최 초 등 록 일	2006년 1월 1일	시 설 소 유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주 요 사 업	숲속산책, 종교영역 하느님 말씀, 일상 생활 훈련, 감각, 수학, 언어, 문화, 예술활동		

2. 직영시설 폐지사유

- 1) 참좋은 기초학교는 가톨릭 대안학교로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가톨릭교회에서 신앙을 구하며, 신앙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운영해 오다가 지난 2007년 2월 26일 경, 박○○님께서 본 법인에 해당 부동산을 기증하였음.
- 2) 해당 부동산이 법인 명의로 등재는 되어 있으나, 참좋은 기초학교는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며, ② 사회복지분야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되어 있는 시설도 아닌 미인가단체로 운영해왔을 뿐만 아니라, ③ 그 운영주체가 본 법인이 아니고(법령상 본 법인이

운영주체가 될 수 없음.) 서유석 신부님이 대표로 있는 개인시설로 운영해오고 있음.

※ 참고: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시설 관리 유형 구분

구분	법인의 재산권	법인의 시설운영권
직 영	●	●
수 탁	×	●
등 록	●	×
	×	×

3) 그럼에도 부동산 소유가 본 법인 명의로 되어 있고 해당 시설에서 회계 집행 등 시설운영과 관련한 어려움이 발생하여 본 법인에 협조를 요청해오는 등 법인에서는 등록단체 관리·지원 차원에서 업무점검이나 예결산 등을 점검해왔었음.

3. 법인 진행사항:

1) 위의 사유와 같이 본 법인 소속 시설이 될 수 없는 것이 명확하고 당초 본 법인이 해당 참좋은 기초학교를 관리·운영할 법적 책임이 없음으로 관리 유형을 ‘직영시설’ ⇒ ‘등록시설’으로 변경하고자 이사회의 승인을 요청함.

※ 향후 관리 방향

1) 위의 ‘꾸러기동산어린이집’과 동일하게 진행 예정임.

◎ 의장 황경원 : 임원분들께서는 제5호 의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고견을 주시기 바라며 특별한 사항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이사와 감사는 제5호 의안의 심의를 통하여 해당 의안에 문제점 및 특이 조치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다. 이후, 의장은 출석이사 전원의 동의와 재청으로 제5호 의안인 법인 산하 직영시설 탈퇴(안) -꾸러기동산어린이집·참좋은 기초학교-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제6호 의안 : 민간위탁사회복지시설의 위·수탁운영협약기간 만료에 따른 수탁운영신청(안)-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시립성동노인종합복지관-승인 요청의 건

◎ 의장 황경원 : 제6호 의안인 민간위탁사회복지시설의 위·수탁운영협약기간 만료에 따른 수탁운영신청(안)-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시립성동노인종합복지관-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김성훈 상임이사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임이사 김성훈 : 제6호 의안인 민간위탁사회복지시설의 위·수탁운영협약기간 만료에 따른 수탁운영신청(안)-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시립성동노인종합복지관- 승인 요청 건으로 이하 자료를 참조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 시립성동노인종합복지관」 수탁운영신청(안)

시 설 명 (시설장 성명)	시설 개요	향후 예정 수탁 기간	관 할 지자체
시립금천노인 종합복지관 (구 자 훈)	■ 소재지: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51길 93-32 ■ 이용자: 15,078명 ■ 종사자: 44명(정규직: 27명/ 비정규직 17명) ■ 설립목적: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전문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노인의 여가활동지원과 각종 노인문제의 예방, 치료 및 집단 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사회적응력을 향상시키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며 생산적 노인복지의 패러다임을 통해 노인복지 선진화를 주도한다. ■ 주요사업: 1. 노인상담사업(이용회원 상담 및 전문상담 프로그램 운영) 2. 평생교육사업(흥미여가, 교양교육, 정보화,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3. 재가복지사업(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등 소외노인 지원, 가정봉사원 활동관리프로그램 운영) 4. 건강지원사업(물리치료 및 의료연계를 통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5. 지역복지사업(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개발관리 프로그램 운영) 6. 취업알선사업(구인 및 구직상담, 취업알선, 사후관리 프로그램 운영) 7. 복리후생사업(경로식당, 셔틀버스, 이미용실 운영) 8. 홍보출판사업(홈페이지 및 SNS관리, 보도자료 관리 등) 9. 지역복지활성화사업(경로당 대상 지역연계 및 여가지원 프로그램 운영) 10.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공익형 등 파견활동 관리) 11. 기타사업(조직강화, 실습지도, 운영위원회, 사업평가 등) 12.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생활관리사 30명 운영관리, 독거노인 안전 확인, 생활교육 등) 13. 독거노인맞춤복지서비스사업(금천구 독거노인 DB관리, 연계서비스 지원 등) 14. 특화사업(외부지원 :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마을공동체 지향 복지관변화지원사업) 15. 금천데이케어센터 운영(장기요양등급 판정어르신 대상 전문치매예방, 재활프로그램 운영) ■ 법인전입금: 연40,000,000원 [5년간 200,000,000원]	2020. 08. 01. ~ 2025. 07. 31. [5년] (최초수탁: 2015. 08. 01.)	서울시

「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 시립성동노인종합복지관」 수탁운영신청(안)

시립성동노인 종합복지관 (김광수)	■ 소재지: 서울시 성동구 마조로 77(마장동) ■ 이용자: 20,838명 ■ 종사자: 37명(정규직: 27명/ 비정규직: 10명) ■ 설립목적: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함으로써 건강증진, 건전한 여가, 문화 활동 및 일상생활의 자립, 자활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내 노인복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확대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주요사업: 1. 노인상담사업 2. 사회교육사업 3. 재가노인복지사업 4. 경로당활성화사업 5. 기능회복사업 6. 복리후생사업 7. 지역복지협동사업 8. 고령자취업알선사업 9. 조사연구, 홍보사업 10. 자원개발관리사업 11. 성동데이케어센터 운영 등 ■ 법인전입금: 연:10,000,000원 [5년간 500,000,000원]	2020. 08. 14. ~ 2025. 08. 13. [5년] (최초수탁: 2000. 08. 14.)	서울시
-----------------------------------	---	--	------------

◎ 의장 황경원 : 임원분들께서는 제6호 의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고견을 주시기 바라며 특별한 사항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이사와 감사는 제6호 의안의 심의를 통하여 수탁 운영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문제점 및 특이 조치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다. 이후, 의장은 출석이사 전원의 동의와 재청으로 제6호 의안인 민간위탁사회복지설의 위·수탁운영협약기간 만료에 따른 수탁운영신청(안)-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시립성동노인종합복지관-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제7호 의안 : 법인 산하 수탁시설 강남구립 성모(논현)어린이집 사무 위·수탁운영계약 만료 전 계약 해지 요청(안)에 대한 승인 요청의 건

◎ 의장 황경원 : 제7호 의안인 법인 산하 수탁시설 강남구립 성모(논현)어린이집 사무 위·수탁운영계약 만료 전 계약 해지 요청(안)에 대한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김성훈 상임이사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임이사 김성훈 : 제7호 의안인 법인 산하 수탁시설 강남구립 성모(논현)어린이집 사무 위·수탁운영계약 만료 전 계약 해지 요청(안)에 대한 승인 요청 건으로 이하 자료를 참조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남구립 성모(논현)어린이집」 사무 위 수탁운영계약 만료 전 계약 해지 요청(안)

시 설 명 (시설장 성명)	시설 개요	계약 해지 사유	기존 위·수탁운영 기간 만료일	관할 지자체
강 남 구 립 성모어린이집 (Sr. 이인숙)	■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24길 65(논현동) ■ 정원(현원): 142명(128명) ■ 종사자: 26명 ■ 설립목적: 1. 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교육하고 보호하는 전문 보육기관으로 영유아의 신체, 언어, 정서, 사회성 발달을 도모하며 영유아 각자가 지닌 개성을 존중하여 개별능력을 개발시킨다. 2. 부모에게 적절한 정보와 지식을 주어 효과적인 부모기술을 습득하게하고 건강한 생활을 구축하게 한다. 3. 지역사회의 보육수요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 법인전입금: 연 5,000,000원	■ 본 회와 수도자파견운영협약 관계에 있는 (재)천주교까리파스수녀회 유지재단에서 現 시설장의 소임이동 및 수도자 파견운영협약 종료를 요청해옴. (소임종료: 2020년 2월 20일) ■ 이에, 법인에서는 관할 지자체에 계약 해지 관련 공문 발송 및 종료 시점 조율 결과, 2020년 2월 19일까지 운영하고 종료키로 함.	2019. 03. 01. ~ 2024. 02. 29. /5년 (최초수탁: 1998. 03. 01.)	강남구

◎ 의장 황경원 : 임원분들께서는 제7호 의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고견을 주시기 바라며 특별한 사항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이사와 감사는 제7호 의안의 심의를 통하여 해당 의안에 문제점 및 특이 조치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다. 이후, 의장은 출석이사 전원외 동의와 재청으로 제7호 의안인 법인 산하 수탁시설 강남구립 성모(논현)어린이집 사무 위·수탁운영계약 만료 전 계약 해지 요청(안)에 대한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또한, 임원진(이사·감사)은 법인사무국에서 해당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와 그 보호자 및 종사자들을 위하여 인계인수에 만전을 기하여 유종지미(有終之美)를 거둘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당부하다]

■ 제8호 의안 : 법인 및 산하 직영·수탁시설 2019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요청 의 건

◎ 의장 황경원 : 제8호 의안인 법인 및 산하 직영·수탁시설 2019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김성훈 상임이사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임이사 김성훈 : 제8호 의안은 법인 및 산하 직영·수탁 71개 시설에서 2019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승인을 요청해왔고 해당 자료에 대하여 사회복지팀 담당(관)의 1차 검토와 법인 재무·회계담당관의 2차 검토, 최종적으로 심점섭 이사님과 김기선 감사님의 3차 검토를 거쳐 수정·보완하였음을 안내드리며, 2019년 제1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을 요청해온 4개 시설, 2019년 제2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을 요청해온 24개 시설, 2019년 제3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을 요청해온 법인사 무국과 26개 시설, 2019년 제4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을 요청해온 17개 시설에 대하여 증감율이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고자 하오니 별도자료 「2019년 제5차 임시이사회 자료집」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제5차 임시이사회 자료집」 ⇒ 이하 ‘자료집’으로 표기)

[참고] 법인 & 총 71개 시설	법인 산하 직영·수탁시설 제1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요청 시설 ⇒ 4개 시설
	법인 산하 직영·수탁시설 제2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요청 시설 ⇒ 24개 시설
	법인 및 산하 직영·수탁시설 제3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요청 시설 ⇒ 법인과 26개 시설
	법인 산하 직영·수탁시설 제4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요청 시설 ⇒ 17개 시설

◎ 상임이사 김성훈 : 법인 산하 직영·수탁시설 제1차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이사회의 승인을 요청해온 4개 시설 중 높은 증감율을 보이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 보고드리고자 하오니, 자료집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천원)

분야	구분	시설명	세 입				세 출				쪽 번호
			2019년 예산(A)	2019년 1차 추경예산(B)	증감 (B-A)	비율 (%)	2019년 예산(A)	2019년 1차 추경예산(B)	증감 (B-A)	비율 (%)	
영유아 (2개)	수탁	동 화 나 라 어 린 이 집	1,295,000	1,197,500	-97,500	-7.5	1,295,000	1,197,500	-97,500	-7.5	11
	수탁	해 그 린 어 린 이 집	380,523	367,776	-12,747	-3.3	380,523	367,776	-12,747	-3.3	12
아 동 (2개)	수탁	동 작 방 과 후 교 실 어 린 이 실 집	69,250	70,470	1,220	1.8	69,250	70,470	1,220	1.8	13
	직영	해 뜨 는 집	258,855	293,629	34,774	13.4	258,855	293,629	34,774	13.4	14

◎ 상임이사 김성훈 : 법인 산하 직영·수탁시설 제2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이사회의 승인을 요청해온 24개 시설 중 높은 증감율을 보이고 있는 시설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고자 하오니, 자료집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천원)

분야	구분	시설명	세입				세출				족 번호
			2019년 1차 추경예산(A)	2019년 2차 추경예산(B)	증감 (B-A)	비율 (%)	2019년 1차 추경예산(A)	2019년 2차 추경예산(B)	증감 (B-A)	비율 (%)	
종합복지 (1개)	수탁	동작종합사회복지관	1,899,218	1,884,514	14,704	-0.8	1,899,218	1,884,514	14,704	-0.8	19
영유아 (3개)	수탁	보미나어린이집	543,115	559,466	16,351	3.0	543,115	559,466	16,351	3.0	20
	수탁	은도어린이집	581,074	580,368	-706	-0.1	581,074	580,368	-706	-0.1	21
	수탁	해뜨락어린이집	405,562	408,061	2,499	0.6	405,562	408,061	2,499	0.6	22
아동 (3개)	수탁	상계방과후어린이집	62,298	59,893	-2,405	-3.9	62,298	59,893	-2,405	-3.9	23
	직영	셋별지역아동센터	89,097	106,382	17,285	19.4	89,097	106,382	17,285	19.4	24
	직영	우리들의공부방 지역아동센터	203,859	210,229	6,370	3.1	203,859	210,229	6,370	3.1	25
노인 (7개)	수탁	서초노인요양센터	6,659,549	6,744,884	85,335	1.3	6,659,549	6,744,884	85,335	1.3	26
	직영	갈현동성당데이케어센터	523,946	544,346	20,400	3.9	523,946	544,346	20,400	3.9	27
	직영	고척동성당데이케어센터	450,000	460,000	10,000	2.2	450,000	460,000	10,000	2.2	28
	직영	구파발성당데이케어센터	493,421	508,327	14,906	3.0	493,421	508,327	14,906	3.0	29
	직영	금호동성당데이케어센터	435,263	417,050	-18,213	-4.2	435,263	417,050	-18,213	-4.2	30
	직영	왕십리성당데이케어센터	538,462	572,626	34,164	6.3	538,462	572,626	34,164	6.3	31
	직영	혜화동성당데이케어센터	607,025	606,622	-403	-0.1	607,025	606,622	-403	-0.1	32
장애인 (10개)	직영	다사랑공동생활가정	72,794	77,453	4,659	6.4	72,794	77,453	4,659	6.4	33
	직영	다함공동생활가정	69,934	70,664	730	1.0	69,934	70,664	730	1.0	34
	직영	서로함께(신림) 공동생활가정	77,628	78,914	1,286	1.7	77,628	78,914	1,286	1.7	35
	직영	서로함께(청담) 공동생활가정	81,754	80,372	-1,382	-1.7	81,754	80,372	-1,382	-1.7	36
	수탁	서리풀주간이용센터	251,271	254,448	3,177	1.3	251,271	254,448	3,177	1.3	37
	수탁	서초구립주간이용센터	201,305	201,490	185	0.1	201,305	201,490	185	0.1	38
	직영	성빈센트환경마을	1,342,035	1,459,662	117,627	8.8	1,342,035	1,459,662	117,627	8.8	39
	직영	소라네공동생활가정	77,493	77,176	-317	-0.4	77,493	77,176	-317	-0.4	40
	직영	헬렌켈러의집 단기거주시설	467,826	467,673	-153	0.0	467,826	467,673	-153	0.0	41
	직영	헬렌켈러의집 주간보호시설	226,706	221,759	-4,947	-2.2	226,706	221,759	-4,947	-2.2	42

◎ 상임이사 김성훈 : 법인과 산하 직영·수탁시설 제3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이사회 승인을 요청해온 법인사무국 및 26개 시설 중 높은 증감율을 보이고 있는 시설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고자 하오니, 자료집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천원)

분야	구분	시설명	세 입				세 출				족 번
			2019년2차 추경예산(A)	2019년3차 추경예산(B)	증감 (B-A)	비율 (%)	2019년2차 추경예산(A)	2019년3차 추경예산(B)	증감 (B-A)	비율 (%)	
법 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8,538,265	8,548,265	10,000	0.1	8,538,265	8,548,265	10,000	0.1	47
종합복지 (4개)	수탁	상계종합사회복지관 외 부 설 기 관	3,731,868	3,669,829	-62,039	-1.7	3,731,868	3,669,829	-62,039	-1.7	48
	수탁	신당종합사회복지관	2,373,155	2,373,155	0	0.0	2,373,155	2,373,155	0	0.0	51
	수탁	유락종합사회복지관	4,162,000	4,210,000	48,000	1.2	4,162,000	4,210,000	48,000	1.2	52
	수탁	한빛종합사회복지관 외 부 설 기 관	3,964,906	3,914,878	-50,028	-1.3	3,964,906	3,914,878	-50,028	-1.3	53
영유아 (1개)	수탁	예다움보듬이나눔이 어 린 이 집	538,981	539,888	907	0.2	538,981	539,888	907	0.2	57
노 인 (8개)	수탁	동작노인종합복지관 외 부 설 기 관	3,766,930	3,785,968	19,038	0.5	3,766,930	3,785,968	19,038	0.5	58
	직영	성가정노인종합복지관 외 부 설 기 관	2,693,500	2,753,100	59,600	2.2	2,693,500	2,753,100	59,600	2.2	60
	수탁	성동노인종합복지관 외 부 설 기 관	3,944,974	3,923,051	-21,923	-0.6	3,944,974	3,923,051	-21,923	-0.6	62
	직영	상계동성당데이케어센터	490,490	492,912	2,422	0.5	490,490	492,912	2,422	0.5	64
	직영	시흥4동성당데이케어센터	441,557	431,729	-9,828	-2.2	441,557	431,729	-9,828	-2.2	65
	직영	신림성모성당데이케어센터	580,050	609,167	29,117	5.0	580,050	609,167	29,117	5.0	66
	직영	행운동성당데이케어센터	514,449	469,585	-44,864	-8.7	514,449	469,585	-44,864	-8.7	67
	직영	화곡본동성당데이케어센터	658,600	669,000	10,400	1.6	658,600	669,000	10,400	1.6	68
장애인 (10개)	수탁	구립강서구직업재활센터	1,979,836	2,066,315	86,476	4.4	1,979,836	2,066,315	86,476	4.4	69
	직영	너울자리공동생활가정	87,835	88,138	303	0.3	87,835	88,138	303	0.3	70
	직영	루치아공동생활가정	75,751	76,079	328	0.4	75,751	76,079	328	0.4	71
	직영	마로니에공동생활가정	103,023	102,603	-420	-0.4	103,023	102,603	-420	-0.4	72
	직영	바오로교실보호작업장	404,449	386,569	-17,880	-4.4	404,449	386,569	-17,880	-4.4	73
	직영	사랑손주간보호센터	234,409	237,188	2,779	1.2	234,409	237,188	2,779	1.2	74
	수탁	중구장애인복지관	1,854,688	1,854,688	0	0.0	1,854,688	1,854,688	0	0.0	75
	직영	햇 빛 자 리	271,481	270,495	-986	-0.4	271,481	270,495	-986	-0.4	76
	직영	헬 렌 켈 러 의 집 공 동 생 활 가 정	61,035	61,074	39	0.1	61,035	61,074	39	0.1	77
	직영	헬 렌 켈 러 의 집 공 동 생 활 가 정 2 호	76,411	80,645	4,234	5.5	76,411	80,645	4,234	5.5	78
여성 (1개)	직영	성 가 정 입 양 원	2,189,786	2,189,786	0	0.0	2,189,786	2,189,786	0	0.0	79
노숙인 (1개)	직영	우 리 집 공 동 체	147,861	159,537	11,676	7.9	147,861	159,537	11,676	7.9	80

(단위:천원)

분야	구분	시설명	세 입				세 출				쪽 번호
			2019년3차 추경예산(A)	2019년3차 추경예산(B)	증감 (B-A)	비율 (%)	2019년3차 추경예산(A)	2019년3차 추경예산(B)	증감 (B-A)	비율 (%)	
푸드 (1개)	수탁	성북푸드뱅크마켓센터	294,299	293,469	-830	-0.3	294,299	293,469	-830	-0.3	81

※ 관·항 변경(총액변동 없음.) :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중구장애인복지관, 성가정입양원

◎ 상임이사 김성훈 : 법인 산하 직영·수탁시설 제4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이사회의 승인을 요청해온 17개 시설 중 높은 증감율을 보이고 있는 시설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고자 하오니, 자료집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천원)

분야	구분	시설명	세 입				세 출				쪽 번호
			2019년3차 추경예산(A)	2019년3차 추경예산(B)	증감 (B-A)	비율 (%)	2019년3차 추경예산(A)	2019년3차 추경예산(B)	증감 (B-A)	비율 (%)	
종합복지 (1개)	수탁	중곡종합사회복지관	2,217,883	2,172,468	-45,415	-2.0	2,217,883	2,172,468	-45,415	-2.0	87
노인 (4개)	수탁	금천노인종합복지관 외 부설 기 관	5,239,790	5,244,084	4,294	0.1	5,239,790	5,244,084	4,294	0.1	88
	수탁	양천어르신요양센터 외 부설 기 관	3,359,088	3,393,829	34,741	1.0	3,359,088	3,393,829	34,741	1.0	90
	직영	신당동성당데이케어센터	581,167	588,101	6,934	1.2	581,167	588,101	6,934	1.2	92
	직영	천호동성당데이케어센터	588,730	591,960	3,230	0.5	588,730	591,960	3,230	0.5	93
	직영	꿈손장애인단기거주시설	399,127	398,158	-969	-0.2	399,127	398,158	-969	-0.2	94
장애인 (10개)	직영	나자로의집보호작업장	352,047	351,528	-519	-0.1	352,047	351,528	-519	-0.1	95
	직영	디딤자리	2,079,895	2,100,206	20,311	1.0	2,079,895	2,100,206	20,311	1.0	96
	직영	바오로교실주간보호센터	322,911	324,711	1,800	0.6	322,911	324,711	1,800	0.6	97
	직영	보금자리공동생활가정	70,767	70,852	85	0.1	70,767	70,852	85	0.1	98
	직영	사랑손보호작업장	567,052	548,913	-18,139	-3.2	567,052	548,913	-18,139	-3.2	99
	수탁	서초한우리정문화센터 외 부설 기 관	5,648,197	5,699,296	51,099	0.9	5,648,197	5,699,296	51,099	0.9	100
	직영	신망에공동생활가정	103,140	103,474	334	0.3	103,140	103,474	334	0.3	102
	직영	신망에의집	447,941	445,280	-2,661	-0.6	447,941	445,280	-2,661	-0.6	103
	직영	하늘자리공동생활가정	73,627	73,521	-106	-0.1	73,627	73,521	-106	-0.1	104
	직영	마음자리	801,782	782,738	-19,044	-2.4	801,782	782,738	-19,044	-2.4	105
여성 (2개)	직영	화해의집쉼자리	453,271	435,831	-17,440	-3.8	453,271	435,831	-17,440	-3.8	106

◎ 의장 황경원 : 임원분들께서는 제8호 의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고견을 주시기 바라며 특별한 사항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이사와 감사는 제8호 의안의 심의를 통하여 해당 의안에 문제점 및 특이 조치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다. 이후, 의장은 출석이사 전원의 동의와 재청으로 제8호 의안인 법인 및 산하 직영·수탁시설 2019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제9호 의안 : 법인 및 산하 직영·수탁시설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요청의 건

◎ 의장 황경원 : 제9호 의안인 법인 및 산하 직영·수탁시설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김성훈 상임이사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임이사 김성훈 : 제9호 의안인 법인 및 산하 직영·수탁시설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을 요청 해온 법인사무국과 총72개(부설기관 포함.)시설에 대하여 임원분들께서는 「자료집」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법인사무국의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법인사무국 부회장Fr조용철께서 발표한 후, 이어 산하 직영·수탁시설의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 법 인 및 총72개시설	법인 및 산하 직영·수탁시설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요청 시설 ⇒ 법인 및 72개 시설
--	---

■ 법인 및 산하 직영·수탁 72개 시설의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단위:천원)

분야	구분	시 설 명	세 입				세 출				쪽 번호
			2019년 추경예산(A)	2020년 예산(B)	증감 (B-A)		2019년 추경예산(A)	2020년 예산(B)	증감 (B-A)		
					금액	%			금액	%	
법	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8,548,265	8,800,037	251,772	2.9	8,548,265	8,800,037	251,772	2.9	115
총 합 (7개)	수탁	동작종합사회복지관	1,884,514	1,894,424	9,910	0.5	1,884,514	1,894,424	9,910	0.5	121
	수탁	등촌7종합사회복지관 외 부 설 기 관	2,774,550	2,923,300	148,750	5.4	2,774,550	2,923,300	148,750	5.4	125
	수탁	상계종합사회복지관 외 부 설 기 관	3,669,829	3,756,318	86,489	2.4	3,669,829	3,756,318	86,489	2.4	134
	수탁	신당종합사회복지관	2,373,155	2,429,654	56,499	2.4	2,373,155	2,429,654	56,499	2.4	141
	수탁	유락종합사회복지관	4,210,000	4,180,000	-30,000	-0.7	4,210,000	4,180,000	-30,000	-0.7	145
	수탁	중곡종합사회복지관	2,172,468	2,069,013	-103,455	-4.8	2,172,468	2,069,013	-103,455	-4.8	148
	수탁	한빛종합사회복지관 외 부 설 기 관	3,914,878	3,820,142	-94,736	-2.4	3,914,878	3,820,142	-94,736	-2.4	152
영유아 (1개)	수탁	구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	1,381,807	1,376,087	-5,720	-0.4	1,381,807	1,376,087	-5,720	-0.4	165

분야	구분	시 설 명	세 입				세 출				쪽 번호
			2019년 추경예산(A)	2020년 예산(B)	증감 (B-A)		2019년 추경예산(A)	2020년 예산(B)	증감 (B-A)		
					금액	%			금액	%	
아 동 (3개)	직영	셋 별 지 역 아 동 센 터	106,382	111,119	4,737	4.5	106,382	111,119	4,737	4.5	171
	직영	우 리 들 의 공 부 방 지 역 아 동 센 터	210,229	192,605	-17,624	-8.4	210,229	192,605	-17,624	-8.4	174
	직영	해 뜨 는 집	293,629	274,229	-19,400	-6.6	293,629	274,229	-19,400	-6.6	178
노 인 (21개)	수탁	금천노인종합복지관 외 부 설 기 관	5,244,084	5,629,763	385,679	7.4	5,244,084	5,629,763	385,679	7.4	183
	수탁	동작노인종합복지관 외 부 설 기 관	3,785,968	3,856,163	70,195	1.9	3,785,968	3,856,163	70,195	1.9	192
	직영	성가정노인종합복지관 외 부 설 기 관	2,753,100	3,337,000	583,900	21.2	2,753,100	3,337,000	583,900	21.2	198
	수탁	성동노인종합복지관 외 부 설 기 관	3,923,051	3,751,069	-171,982	-4.4	3,923,051	3,751,069	-171,982	-4.4	204
	직영	강 일 성 모 노 인 요 양 원	3,108,134	2,703,339	-404,794	-13.0	3,108,134	2,703,339	-404,794	-13.0	215
	수탁	서 초 노 인 요 양 센 터	6,744,884	6,879,262	134,378	1.7	6,744,884	6,879,262	134,378	1.7	219
	수탁	양천어르신요양센터 외 부 설 기 관	3,393,829	3,385,249	-8,580	-0.3	3,393,829	3,385,249	-8,580	-0.3	224
	수탁	고 덕 양 로 원	2,187,787	2,042,503	-145,284	-6.6	2,187,787	2,042,503	-145,284	-6.6	238
	직영	갈현동성당데이케어센터	544,346	500,064	-44,282	-8.1	544,346	500,064	-44,282	-8.1	241
	직영	고척동성당데이케어센터	460,000	480,000	20,000	4.3	460,000	480,000	20,000	4.3	246
	직영	구파발성당데이케어센터	508,327	519,713	11,386	2.2	508,327	519,713	11,386	2.2	253
	직영	금호동성당데이케어센터	417,050	434,790	17,740	4.3	417,050	434,790	17,740	4.3	257
	직영	상계동성당데이케어센터	491,912	501,779	9,867	2.0	491,912	501,779	9,867	2.0	261
	직영	시흥4동성당데이케어센터	431,729	461,429	29,700	6.9	431,729	461,429	29,700	6.9	265
	직영	신당동성당데이케어센터	588,102	539,341	-48,761	-8.3	588,102	539,341	-48,761	-8.3	269
	직영	신림성모성당데이케어센터	609,167	603,067	-6,100	-1.0	609,167	603,067	-6,100	-1.0	274
	직영	왕십리성당데이케어센터	572,626	521,923	-50,703	-8.9	572,626	521,923	-50,703	-8.9	281
	직영	천호동성당데이케어센터	591,960	541,212	-50,748	-8.6	591,960	541,212	-50,748	-8.6	285
	직영	행운동성당데이케어센터	469,585	464,972	-4,613	-1.0	469,585	464,972	-4,613	-1.0	289
	직영	혜화동성당데이케어센터	606,622	586,142	-20,480	-3.4	606,622	586,142	-20,480	-3.4	294
	직영	화곡동성당데이케어센터	669,000	653,000	-16,000	-2.4	669,000	653,000	-16,000	-2.4	301
장애인 (3개)	수탁	구립강서구직업재활센터	2,066,315	3,158,278	1,091,963	52.8	2,066,315	3,158,278	1,091,963	52.8	307
	직영	꿈손장애인단기보호센터	398,158	452,289	27,131	6.8	398,158	452,289	27,131	6.8	312
	직영	나자로의집보호작업장	351,528	367,052	15,524	4.4	351,528	367,052	15,524	4.4	315
	직영	너울자리공동생활가정	88,138	179,834	91,696	104.0	88,138	179,834	91,696	104.0	317

분야	구분	시 설 명	세 입				세 출				쪽 번호
			2019년 추경예산(A)	2020년 예산(B)	증감 (B-A)		2019년 추경예산(A)	2020년 예산(B)	증감 (B-A)		
					금액	%			금액	%	
장애인	직영	다사랑공동생활가정	77,453	71,267	-6,186	-8.0	77,453	71,267	-6,186	-8.0	320
	직영	다함공동생활가정	70,664	62,951	-7,713	-10.9	70,664	62,951	-7,713	-10.9	322
	직영	두레네공동생활가정	76,276	73,890	-2,386	-3.1	76,276	73,890	-2,386	-3.1	324
	직영	디 딤 자 리	2,100,206	2,126,764	26,558	1.3	2,100,206	2,126,764	26,558	1.3	326
	직영	루치아공동생활가정	76,079	67,286	-8,793	-11.6	76,079	67,286	-8,793	-11.6	330
	직영	마로니에공동생활가정	102,603	118,282	15,679	15.3	102,603	118,282	15,679	15.3	333
	직영	바오로교실보호작업장	386,569	376,598	-9,971	-2.6	386,569	376,598	-9,971	-2.6	336
	직영	바오로교실주간보호시설	324,711	286,371	-38,340	-11.8	324,711	286,371	-38,340	-11.8	339
	직영	보금자리공동생활가정	70,852	72,879	2,027	2.9	70,852	72,879	2,027	2.9	342
	직영	비둘기보호작업장	425,024	408,514	-16,510	-3.9	425,024	408,514	-16,510	-3.9	344
	직영	비둘기주간보호시설	210,445	203,233	-7,212	-3.4	210,445	203,233	-7,212	-3.4	348
	직영	사랑손보호작업장	548,913	636,461	87,548	15.9	548,913	636,461	87,548	15.9	351
	직영	사랑손주간보호센터	237,188	253,974	16,786	7.1	237,188	253,974	16,786	7.1	354
	직영	서로함께(신림) 공동생활가정	78,914	83,360	4,446	5.6	78,914	83,360	4,446	5.6	357
	직영	서로함께(청담) 공동생활가정	80,372	83,170	2,798	3.5	80,372	83,170	2,798	3.5	360
	수탁	서초한우리장보문화센터 외 부 설 기 관	6,155,234	6,430,163	274,929	4.5	6,155,234	6,430,163	274,929	4.5	363
	직영	성빈센트환경마을	1,459,662	1,437,906	-21,756	-1.5	1,459,662	1,437,906	-21,756	-1.5	373
	직영	성지보호작업장	441,049	449,419	8,370	1.9	441,049	449,419	8,370	1.9	376
	직영	소라네공동생활가정	77,176	78,588	1,412	1.8	77,176	78,588	1,412	1.8	378
	직영	신망에공동생활가정	103,474	94,949	-8,525	-8.2	103,474	94,949	-8,525	-8.2	381
	직영	신 망 에 의 집	445,280	464,734	19,454	4.4	445,280	464,734	19,454	4.4	384
	직영	연희네공동생활가정	58,169	60,656	2,487	4.3	58,169	60,656	2,487	4.3	387
	수탁	중 구 장 애 인 복 지 관	1,854,688	1,673,804	-180,884	-9.8	1,854,688	1,673,804	-180,884	-9.8	390
	직영	하늘자리공동생활가정	73,521	74,115	594	0.8	73,521	74,115	594	0.8	397
	직영	햇 빛 자 리	270,495	230,188	-40,307	-14.9	270,495	230,188	-40,307	-14.9	399
	직영	헬 렌 켈 러 의 집 공 동 생 활 가 정	61,074	61,838	764	1.3	61,074	61,838	764	1.3	402
	직영	헬 렌 켈 러 의 집 공 동 생 활 가 정 2 호	80,645	87,397	6,752	8.4	80,645	87,397	6,752	8.4	405
	직영	헬 렌 켈 러 의 집 단 기 거 주 시 설	467,673	407,909	-59,764	-12.8	467,673	407,909	-59,764	-12.8	408
	직영	헬 렌 켈 러 의 집 주 간 보 호 시 설	221,759	206,997	-14,762	-6.7	221,759	206,997	-14,762	-6.7	412

분야	구분	시 설 명	세 입				세 출				쪽 번호
			2019년 추경예산(A)	2020년 예산(B)	증감 (B-A)		2019년 추경예산(A)	2020년 예산(B)	증감 (B-A)		
					금액	%			금액	%	
여 성 (3개)	직영	마 음 자 리	782,738	780,858	-1,880	-0.2	782,738	780,858	-1,880	-0.2	419
	직영	성 가 정 입 양 원	2,189,786	1,779,906	-409,880	-18.7	2,189,786	1,779,906	-409,880	-18.7	422
	직영	화 해 의 집 쉼 자 리	435,831	462,256	26,425	6.1	435,831	462,256	26,425	6.1	426
노숙인 (1개)	직영	우 리 집 공 동 체	159,537	102,283	-57,254	-35.9	159,537	102,283	-57,254	-35.9	431
의 료 (2개)	직영	요 쉼 의 원	2,743,659	2,582,659	-161,000	-5.9	2,743,659	2,582,659	-161,000	-5.9	437
	직영	희 망 의 집	166,961	151,500	-15,461	-9.3	166,961	151,500	-15,461	-9.3	441
푸 드 (1개)	수탁	성북푸드뱅크마켓센터	293,469	225,495	-67,974	-23.2	293,469	225,495	-67,974	-23.2	445

◎ 의장 황경원 : 임원분들께서는 제9호 의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고견을 주시기 바라며 특별한 사항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이사와 감사는 제9호 의안의 심의를 통하여 해당 의안에 대한 질의 및 특이 조치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다. 이후, 의장은 출석이사 전원의 동의와 재청으로 제9호 의안인 법인 및 산하 직영·수탁시설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며 2020년 사업계획과 그에 따른 예산이 지역 사회현장에서 목적에 부합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법인사무국 및 산하 직영·수탁시설에서는 업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다]

■ 제10호 의안 : 카리타스사회적기업지원센터, 서민금융진흥원 「2014년 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신청 및 2020년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사업계획(안) 승인 요청의 건

◎ 의장 황경원 : 제10호 의안인 카리타스사회적기업지원센터, 서민금융진흥원 「2019년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신청에 따른 지원금 배정 확정 및 관련 계약 체결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김성훈 상임이사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임이사 김성훈 : 제10호 의안은 카리타스사회적기업지원센터에서 지난 2014년 초, 소외된 취약계층(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방안을 고심하던 중 취약계층(북한이탈주민) 당사자들이 창업을 통한 자립 욕구가 있음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미소금융중앙재단(現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 2014년도 창업 지원사업」 신청·심의를 통해 복지사업자로 선정되어 현재까지 진행해 오고 있는 사업임을 보고 드리며, 이에, 해당 사업을 통해 대상자들에게 창업 자립 지원 서비스를 지속하고자 내년 상반기 서민금융진흥원에 「2020년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을 신청하려하며 또한 2014년도 지원금에 대한 지원기간 만료일 이후 미상환금액의 지원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 요청드립니다.

사 업 명											
취약계층(북한이탈주민)의 창업 자립 지원											
분 야	저소득층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 대출 사업										
사 업 기 간	매년 서민금융진흥원과 약정 체결 후 사업 진행 (2014년~2019년 현재)										
2020년 사업지원 신 청 금 액	일금 일억오천만원정(W150,000,000)										
세 부 세 항	▶ 서민금융진흥원 2014년 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신청 승인 요청 1. 2014년도 지원금 내역 (2019. 09. 23. 기준) <table border="1"> <tr> <th>지원연도</th> <th>지원기간 만료일</th> <th>지원금(A)</th> <th>기상환 지원금(B)</th> <th>미상환 지원금(A-B)</th> </tr> <tr> <td>2014</td> <td>2019. 12. 16.</td> <td>200,000,000원</td> <td>191,392,302원</td> <td>8,607,698원</td> </tr> </table> 2. 추가 설명 : 만료일이 지난 미상환금에 대해 연장 신청해야 함을 공문 접수함. 연장신청 시 2년씩 3회 재연장. 미상환금 중 700만원은 뇌출혈로 쓰러진 조*희의 연체금. 그 외 다른 한 명은 연체 없이 상환 중 임. ▶ 2020년 사업계획(안) 승인 요청 1. 자금 용도 및 대출 금액 1) 예비 창업자 : 창업 자금 ⇒ 최대 5,000만원 내 지원: 임차보증금 3,000만원, 운영자금 2,000만원 2) 기존 사업자 : 경영 개선 자금 ⇒ 최대 3,000만원 내 지원: 운영자금 2,000만원, 2차 운영자금 1,000만원 2. 대출 기간 (총 5년) 1) 거치 기간: 6개월 2) 상환 기간: 4년 6개월 3. 적용 이자율 1) 금리: 연 3% 2) 지연 금리: 연 7%(기존 금리 3% 포함하여 7% 적용) 4. 상환 방법 : 거치식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 월납	지원연도	지원기간 만료일	지원금(A)	기상환 지원금(B)	미상환 지원금(A-B)	2014	2019. 12. 16.	200,000,000원	191,392,302원	8,607,698원
	지원연도	지원기간 만료일	지원금(A)	기상환 지원금(B)	미상환 지원금(A-B)						
	2014	2019. 12. 16.	200,000,000원	191,392,302원	8,607,698원						

◎ 의장 황경원 : 임원분들께서는 제10호 의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고견을 주시기 바라며 특별한 사항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이사와 감사는 제10호 의안의 심의를 통하여 해당 의안에 대한 적법성·타당성이 인정되며, 문제점 및 특이 조치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다. 이후, 의장은 출석이사 전원의 동의와 재청으로 제10호 의안인 카리타스사회적기업지원센터, 서민금융진흥원 「2019년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신청에 따른 지원금 배정 확정 및 관련 계약 체결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제11호 의안 : 법인 산하 직영시설 「비둘기보호작업장」 시설유형변경(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에 따른 명칭 변경(안) 승인 요청의 건

◎ 의장 황경원 : 제11호 의안인 법인 산하 직영시설 「비둘기보호작업장」 시설유형변경(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에 따른 명칭 변경(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김성훈 상임이사가 설명해 주시기를 청하다.

◎ 상임이사 김성훈 : 제11호 의안인 법인 산하 직영시설 「비둘기보호작업장」 시설유형변경(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에 따른 명칭 변경(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이하 자료를 참조하여 설명하다.

「비둘기보호작업장」 시설유형변경(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에 따른 명칭 변경

■ 시설 개요

시 설 명 (시 설 장)	비둘기보호작업장 (최금란)	이 용 자 인 원	총 30명 (근로: 11명, 훈련: 19명)
		이용자 평균연령	만 39.9세
		직 원 현 황	총 5명
소 재 지	서울시 종로구 동숭4길 28	설 치 신 고 일	1981년 5월 13일

※ 장애인보호작업장 이용자 평균연령 : 만 34세
(보건복지부,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단체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TF팀 자료, 2019)

■ 명칭 변경 및 주요사업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일자
시 설 명 칭	비둘기보호작업장	비둘기직업적응훈련센터	2019년 12월 19일
시 설 종 류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주 요 사 업	1. 직업상담 및 직업평가 2. '우리다' 블렌딩티 생산 및 임가공작업 3. 사회적응훈련 4. 교육 및 특별활동	1 재활기능 기초훈련 2. 직업기초기능훈련 3. 교육활동	

「비둘기보호작업장」 시설유형변경(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에 따른 명칭 변경

■ 시설유형변경 추진 배경

장애정도와 노령화 등으로 인해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들의 비율이 높은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로 시설유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이용자의 수준에 적합한 기초작업능력 및 사회적응훈련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장애인 이용자의 직업적 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주요사항 비교

구분	역할	이용자	종사자	비고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인에게 직업훈련기회를 제공하고, 보호고용환경에서 근로의 기회 제공 및 유상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근로사업장이거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	근로장애인 (급여지급, 4대보험 가입) 훈련장애인 (수당지급)	시설이용자 10명당 1명	근로장애인에 대한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장애인 직업적응 훈련시설	작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에게 작업활동, 일상생활훈련 등을 실시하여 장애인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등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	훈련장애인 (수당지급)	시설이용자 12명당 1명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불가

◎ 의장 황경원 : 임원분들께서는 제11호 의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고견을 주시기 바라며 특별한 사항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이사와 감사는 제11호 의안의 심의를 통하여 해당 의안에 대한 적법성·타당성이 인정되며, 문제점 및 특이 조치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다. 이후, 의장은 출석이사 전원의 동의와 재청으로 제11호 의안인 법인 산하 직영시설 「비둘기보호작업장」 시설유형변경(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에 따른 명칭 변경(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기타 보고 사항

◎ 의장 황경원 : 기타 보고사항에 대하여 김성훈 상임이사가 설명해 주시기를 청하다.

◎ 상임이사 김성훈 : 기타 보고사항 2건 중 먼저, 법인 직영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시설유형 변경 신청 경과 보고 건에 이어 2번째, 법인 산하 직영시설 성가정노인종합복지관과 수탁시설 유락종합사회복지관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선정 관련 보고 건에 대하여 이하 자료를 참조하여 설명하다.

보고 1. 법인 산하 직영 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유형변경(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신청 보고

■ 추진 배경

장애정도와 노령화 등으로 인해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들의 비율이 높은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장애인직업

적응훈련시설로 시설유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이용자의 수준에 적합한 기초작업능력 및 사회적응훈련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장애인 이용자의 직업적 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201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설유형변경 절차 간소화 : 원칙적으로 시설 폐지 후 신규 설치 신고해야 하나 2019년 말까지는 현 시설 운영 유지상태에서 유형변경 신청 가능

■ 추진 개요

1. **안내대상** : 본 회 산하 직영·수탁 장애인보호작업장 6개소(강서구직업재활센터, 나자로의집, 바오로교실, 비둘기, 사랑손, 성지)

2. **신청시설** : 2개소 - 비둘기보호작업장, 사랑손보호작업장

3. **선정시설** : 2개소 - 비둘기보호작업장, 사랑손보호작업장

4. 진행일정

- 1) 심사신청서 접수 : 2019. 09. 18. (수) ~ 09. 27. (금)
- 2) 1차 심사 : 2019. 09. 30. (월)
- 3) 신청시설 시설장 면담 : 2019. 10. 04. (금)
- 4) 신청시설 이용자 보호자 간담회 : 2019. 10. 16. (수) / 10. 24. (목)
- 5) 2차 심사 : 2019. 11. 06. (수)
- 6) 선정발표 : 2019. 11. 07. (목)

5. 심사 및 선정방법

- 1)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로 시설유형변경 신청을 희망하는 본 회 산하 직영·수탁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심사신청서 접수
- 2) 시설유형변경 신청 대상시설 선정 심사기준에 기반을 둔 심사회의를, 시설장 면담 등 진행
- 3) 본 회 차원에서 신청시설 이용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시설유형변경 시 변경사항 파악 여부 및 동의 의사 확인 등을 위한 간담회 진행
- 4) 이용자 특성(작업능력, 연령 등) 및 현황, 이용자 모집관리, 예산 운영관리 등 시설유형변경의 필요성·타당성 등을 중심으로 대상시설 선정

■ 추진 결과 및 향후 계획

1. 비둘기보호작업장 : 자치구에 유형변경 신청 후 직업적응훈련시설로 변경 승인 완료(2019년 12월 12일자)
2. 사랑손보호작업장 : 자치구에 유형변경 신청하였으며, 12월말 결과 공지 예정

시 설 명 (시 설 장)	사랑손보호작업장 (김정영)	이 용 인 원	총 28명 (근로: 12명, 훈련: 16명)
		이 평 균 연 령	만 37.4세
		직 원 현 황	총 5명
소 제 지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4길 46	설 치 신 고 일	1989년 5월 31일

※ 장애인보호작업장 이용자 평균연령 : 만 34세

(보건복지부,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단체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TF팀 자료, 2019)

보고 2

법인 산하 직영시설 「성가정노인종합복지관」 및 수탁시설 「유락종합사회복지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공개 모집 신청 보고 건

■ 시설 현황

시 설 명 (시설장성명)	성가정노인종합복지관(최은영)	종 사 자	25명 (데이케어센터포함)
관 할 지 자 체	강동구청	시 설 규 모	대지 3,300 m ² 건평 2,992 m ²
소 제 지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6길 28	개 관 일 시	1998년 5월 30일
주 요 사 업	상담, 평생교육, 재가복지, 지역복지활성화,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홍보, 후원, 자원봉사, 데이케어등		

■ 추진 배경

1. 인구고령화 및 가족구성 변화(독거노인·노인부부 세대 증가 등)에 따른 돌봄이 필요한 노인 인구 증가.
2. 가족부양 의식 변화에 따른 돌봄의 사회화 필요.
3. 현재 노인 돌봄 사업의 문제점 보완을 위한 변화 필요.

문 제 점	방 안
■ 유사분절적 사업수행 ■ 대상자 중복·누락 ■ 개별·경쟁적 제공기관에 따른 사업수행의 비효율성 ■ 다양한 돌봄 욕구 충족의 어려움 발생 등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운영 : 시·군·구 내 권역별 수행 : 효율적인 사업운영 가능 : 욕구중심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능

⇒ 본 법인 산하 성가정노인종합복지관(강동구)에서는 지역실정 및 대상자 필요에 맞는 맞춤형 돌봄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지역사회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돌봄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작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공모 신청을 첨부와 같이 진행함.

■ 진행 과정

1. 지자체 별로 수행기관 공모 공고: 10.08.(화)~10.28.(월)
2. 수행기관 공모 신청서 제출: 10.28.(월)
3. 심사기준: 공공성, 지역사회네트워크 구축, 효과적인 사업수행능력 등
4. 선정일자: 11.06.(수)
5. 계약서 체결 : 12.18.(수)

※ 위탁기간 (2020.01.01. ~12.31.)

- ⇒ 본 법인 산하 유락종합사회복지관(중구)에서는 지역실정 및 대상자 필요에 맞는 맞춤형 돌봄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지역사회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돌봄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작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공모 신청을 첨부와 같이 진행함.

▶ 진행 과정

1. 지자체 별로 수행기관 공모 공고: 10. 16. (수)~10. 28. (월)
 2. 수행기관 공모 신청서 제출: 10. 28. (월)
 3. 심사기준: 공공성, 지역사회네트워크, 효과적인 사업수행 등
 4. 선정일자: 11. 13. (수)
 5. 계약서 체결 : 12월 중
- ※ 위탁기간 (2020. 01. 01. ~12. 31.)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내용

1. 대상 :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기초연금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 280명
2. 수행기관 · 인력

기관명	담당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유락종합사회복지관	1명	17명

3. 세부내용

- 1) 각 지자체 내 권역별 수행기관 선정(2~3곳)
- 2) 사업내용: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혹서·혹한기 물품지원, 푸드뱅크식품지원, 주거환경개선

▶ 향후 기대 사항

1. 대상자 욕구에 맞는 맞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기요양(고비용 돌봄) 진입 예방
2. 통합적·체계적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사회 노인 돌봄 기능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3. 2000년부터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운영 경험을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실천가능

[의장은 출석 이사와 감사에게 해당 기타보고 건에 대하여 문제점 및 특이 조치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다.]

[의장은 출석 이사와 감사에게 본 회 법인사무국 진행 및 예정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및 고견이 없음을 확인한 후 법인사무국 각 팀 담당관·담당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법인사무국과 산하 직영·수탁시설의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 하다.]

의장(대표이사)은 금번 2019년 제5차 임시이사회(총182차)에 상정된 총11개 의안, [제1호 의안] 법인 「기본재산취득」(안) 승인 요청의 건과 [제2호 의안] 법인 「기본재산」 방화동물건 사용(안) -

주거지원사업- 승인 요청의 건, **[제3호 의안]** 법인 산하 「서울가톨릭 장애인복지시설협의회 공통운영규정」 개정(안) 승인 요청의 건과 **[제4호 의안]** 법인 산하 직영시설 시설장 임면(안) 승(추)인 요청의 건, **[제5호 의안]** 법인 산하 직영시설 탈퇴(안) -꾸러기동산어린이집·참좋은 기초학교- 승인 요청의 건, **[제6호 의안]** 민간위탁사회복지시설의 위·수탁운영협약기간 만료에 따른 수탁운영신청(안)-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시립성동노인종합복지관- 승인 요청의 건, **[제7호 의안]** 법인 산하 수탁시설 강남구립 성모(논현)어린이집 사무 위·수탁계약만료 전 계약 해지 요청(안)에 대한 승인 요청의 건과 **[제8호 의안]** 법인 및 산하 직영·수탁시설 2019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요청의 건, **[제9호 의안]** 법인 및 산하 직영·수탁시설 2020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 요청의 건, **[제10호 의안]** 카리타스사회적기업지원센터 「서민금융진흥원 2014년 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 신청 및 2020년 사업계획(안) 승인 요청의 건, **[제11호 의안]** 법인 산하 직영시설 「비둘기보호작업장」 시설유형변경(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에 따른 명칭 변경(안) 승인 요청의 건에 대하여 임원진의 심의로 각 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안내] 2020년 정기이사회 예정일 : 2020년 2월 19일(수) 16:00

상기 의사를 증명하기 위하여 참석이사 전원 기명날인하여 보관하다.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대표이사 황 경 원

상임이사 김 성 훈

이 사 유 경 춘

이 사 심 점 섭

이 사 오 혜 경

이 사 전 

이 사 정 태 호 

이 사 김 명 근 

이 사 김 영 주 

감 사 김 가 전 